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검 토 보 고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8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의의	4
2. 제정안의 주요내용	6
3. 주요 내용별 검토	7
가.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운용(안 제1조 제2조)	7
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안 제3조)	8
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예비비 등(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09. 10.
3. 회부연월일 : 2024. 09..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7조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21년도 GDP의 약 1.3%, 국가예산의 약 4.8% 수준에 해당한다고 함(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2023. 3.15.).

이러한 도로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범칙금·과태료 부과 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으나, 이후에는 운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의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현행법에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100분의 50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관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의의

최근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의 설치·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어¹⁾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충분한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재원 투입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임.

종전에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2007년 국가재정 운용 합리화를 이유로 동법이 폐지되었음.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 하. (생략)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더 ~ 더 (생략)

이에 제정안은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고위험 운전자 대상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도입,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제도개선 연구 등 급격히 변화하는 교통환경 상황에 맞추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교통시설 특별회계(국토부) 운영 현황>

(단위 : 억원)

소관부처	회계	사업 내역		2024년 예산
국토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계정)	고속도로 건설		18,272
		국도 건설		18,283
		도로관리	소계	27,007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10,783
			과적단속 운영	403
			도로 유지보수	8,378
			도로병목지점 개선	2,608
			첨단도로교통체계	2,154
			도로건설 및 관리 종합연구	35
			위험도로 개선	1,597
			기타	1,049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10,165
		기타		5,898
		총계		79,625

※자료: 경찰청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설치되어 도로계정을 통해 고속도로의 건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등 도로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²⁾.

2.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법률 제명을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으로 하여 본칙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2조	관리·운영
제3조	세입
제4조	세출
제5조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6조	차입금
제7조	예비비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9조	잉여금의 처리
부칙	
시행일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 및 용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및 전입금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도로법」 제84조, 같은 법 제95조 및 「유료도로법」 제22조에 따른 수입금 중 국고 수입금
8. 그 밖에 도로의 건설·정비 및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도로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 및 용자
3.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용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정안은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안 제 1조),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별회계는 경찰청장이 관리·운용토록 하며(안 제2조),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와 동법에 근거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3. 주요 내용별 검토

가.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운용(안 제1조, 제2조)

제정안은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해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특별회계는 경찰청장이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정 안

제2조(관리·운용)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경찰청장이 관리·운용한다.

제정안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고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관련 재정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한 예산 확보 뿐 아니라 정책도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³⁾.

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안 제3조)

제정안은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세입으로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100분

3) 「교통안전법」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 50⁴⁾, 동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국고(國庫)에 귀속되는 범칙금의 100분의 50⁵⁾ 등으로 규정하고, 세출로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에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등 관리,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정하고 있음(안 제3조, 제4조)

제 정 안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100분의 50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국고(國庫)에 귀속되는 범칙금의 100분의 50 3.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6조에 따른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경비

- 4)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도경찰청장
 2. ~ 4. (생략)
 - ② (생략)
- 5)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2.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3.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에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등 관리
4.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
5.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6.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정안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와 동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등을 동법에 근거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등의 재원으로 하려는 것으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장비등의 설치·관리,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같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별표1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⁶⁾⁷⁾.

- 6)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7)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에 맞게 국가재정법 별표 1에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886호)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동 제정안 심사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예비비 등(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세출예산의 이월, 잉여금의 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차입금) 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예비비, 잉여금의 처리는 특별회계 관련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특별회계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는 예비비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예비비는 국회에서 총액으로 의결받고 구체적인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후승인⁸⁾만 가능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 권한이 제약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비비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규정 한바⁹⁾와 같이 예비비의 한도를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5

8)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8조(예비비) 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